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81595 손해배상(저)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동하
피 고	1.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석 2.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장지원
변 론 종 결	2025. 9. 9.
판 결 선 고	2025. 11. 14.

주 문

1. 원고들에게,

- 가. 피고 주식회사 D는 각 9,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7.부터 2025. 11.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D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9,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7.부터 2025. 11. 14.까지 연 5%,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D는 각 57,1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D
와 공동하여 위 돈 중 각 47,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사진저작권 인정 여부

가. 갑 제1, 4, 5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1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은 원고
A가 직접 그린 그림을 주변으로 여러 가구 및 소품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함으
로써 원고들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난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

나. 또한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저작자로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자
동적으로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사진에는 원고 A가 직접 그린 그림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사진은 원고들의 신혼집에서 위 그림과 원고들이 공동으로 구



매한 인테리어 소품들 중 일부를 피사체로 삼은 다음 구도 설정과 카메라 각도 등에 관한 원고들 사이의 의견 교환 등을 거쳐 촬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진에 관하여 원고들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진의 공동저작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5 내지 54, 56, 5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그림 물품제조업, 그림 전시관련 기획 서비스, 미술품 등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점, ② 피고 D는 이 사건 사진 중 원고 A가 그린 그림을 삭제하고 피고 D가 판매하고자 하는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2 사진들(총 41장)을 포함한 다수의 이미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침해 사진들'이라 한다)를 제작하였고, 이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된 E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상품목록 및 그 설명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중송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자신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오픈마켓(Open Market)을 운영할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인 오픈마켓의 경우, 판매자와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는 자 사이에 명백한 분리가 있어, 상품의 판매페이지에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명백히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침해 사진들의 판매페이지에는 판매자 "상호명: C 주식회사, 대표자: F"으로 되어 있고, "E 주식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상품, 상품정보, 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오픈마켓의 운영자, 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제20조에서 말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E 주식회사"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과 전자상거래법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침해 사진들의 판매자는 피고 C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도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는 원고들의 저작권권을 침해하는 데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D가 스스로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 D로서는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또는 단체)임을 이미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D는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로부터 아무런 이용허락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진 중 그림 부분을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그림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점, ③ 피고 D가 이 사건 사진에서 변경한 원고 A의 그림에는 'G'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D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하여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D는 이 사건 사진을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그림이 포함된 형태로 변경한 후 그 그림의 소개·광고에 사용함으로써 해당 그림 판매에 도움이 되는 간접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 C도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침해 사진들이 해당 그림 판매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사진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방법 및 피고들의 고의 내지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의 손해액을 각 9,420,000원[= {92,450,000원(= 이 사건 사진의 개별 사진 1장당 50,000원 × 43장 ×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43곳) + 1,300,000원(= 이 사건 사진의 개별 사진 1장당 50,000원 × 13장 ×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2곳) + 100,000원(= 이 사건 사진의 개별 사진 1장당 50,000원 × 1장 ×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2곳) + 350,000원(= 이 사건 사진의 개별 사진 1장당 50,000원 × 7장 ×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1곳)} × 1/10]으로 인정한다.

나. 저작인격권 침해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침해 사진들을



게시하면서 저작권자가 원고들임을 밝히지 않는 등, 이 사건 침해 사진들이 마치 피고 D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성명표시권이 침해되었다.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되고(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성명표시권 침해 경위 및 그 정도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D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각 5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각 ① 피고 C와 공동하여 9,420,000원, ② 단독으로 5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5. 5.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황일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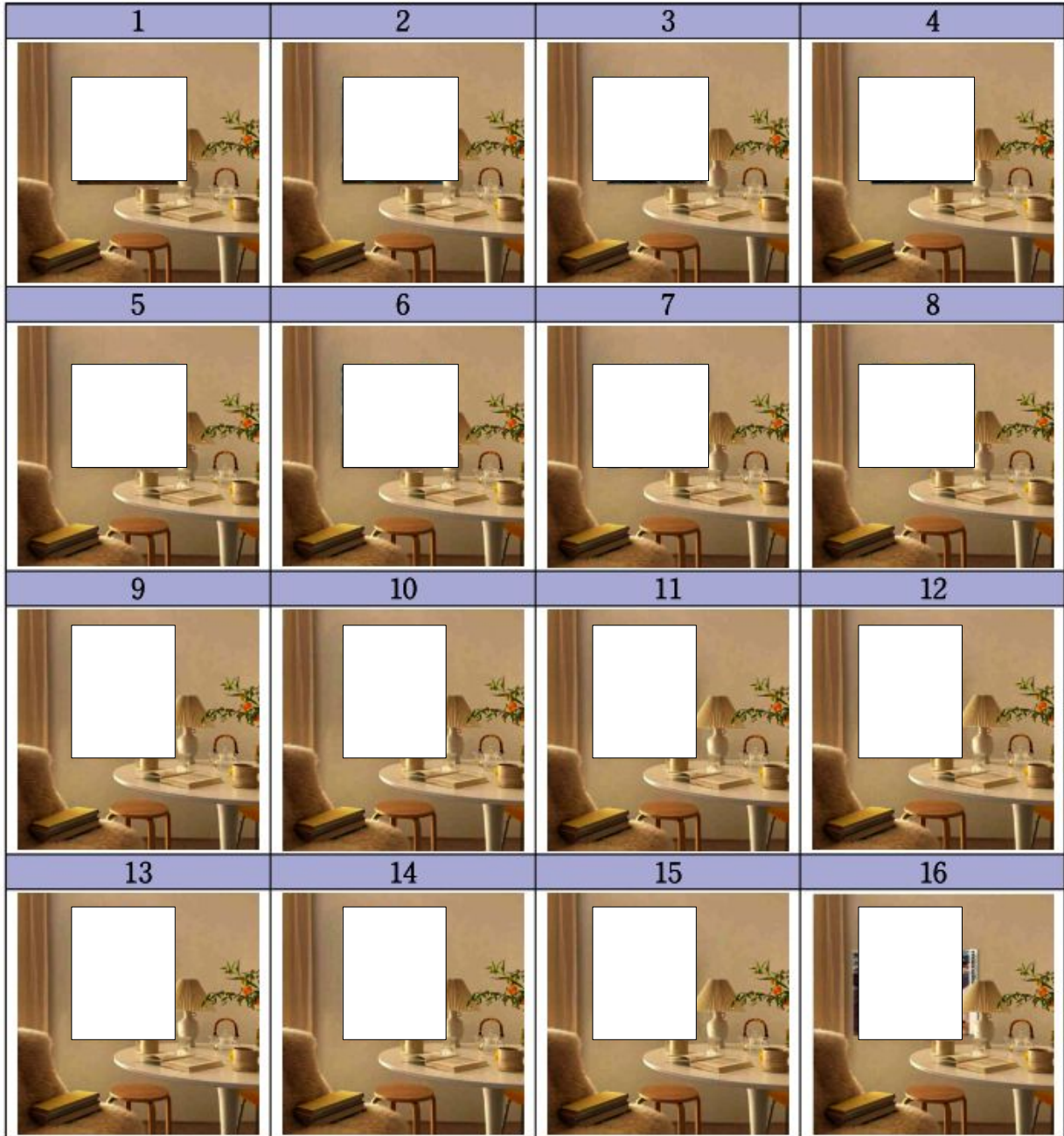
별지 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11

별지 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11

17	18	19	20
21(제외)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11

37	38	39	40
41	42	43(제외)	

끝.